

# 제5강 : 대기 / 수질 법제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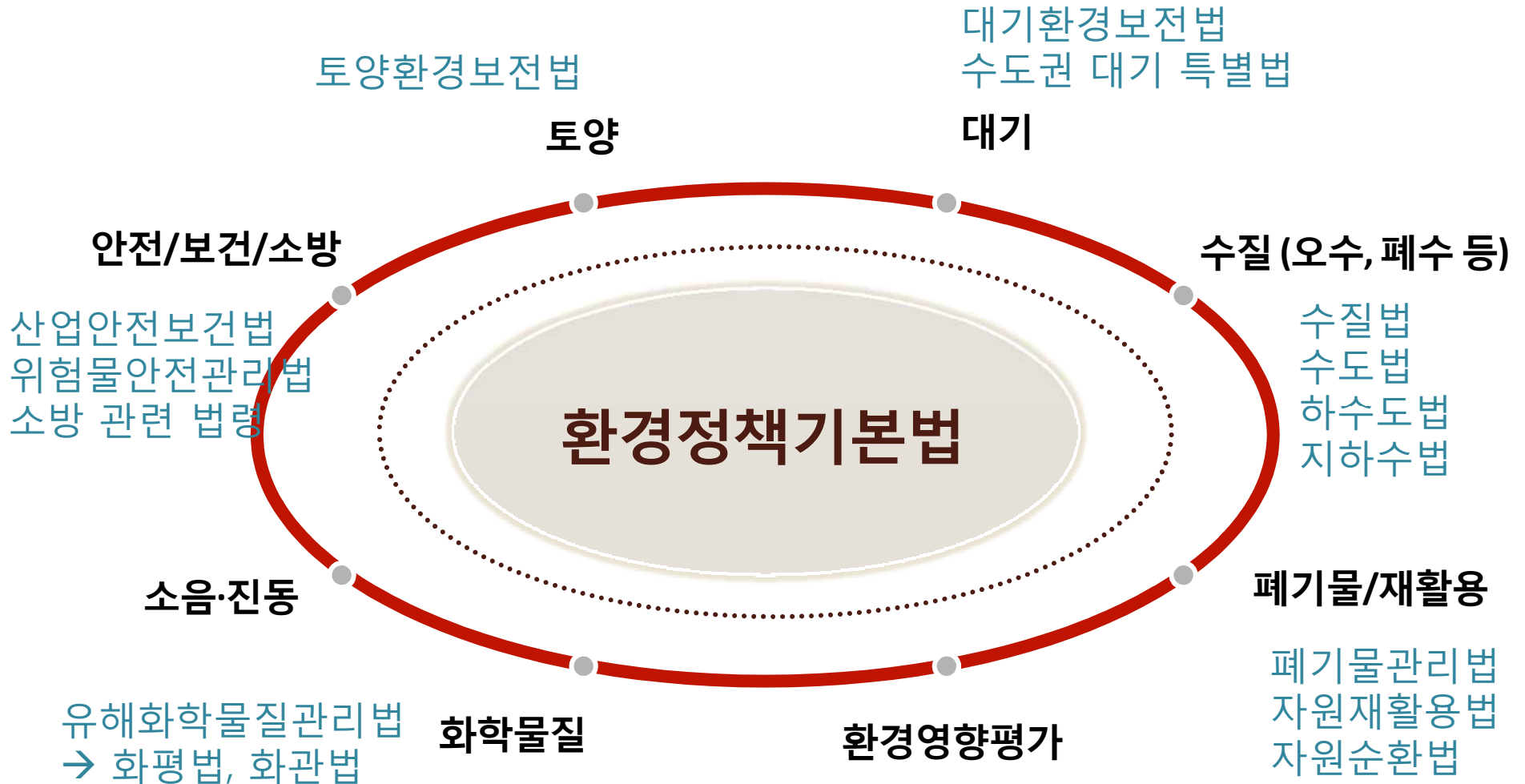
2014. 10. 14.

이소영 변호사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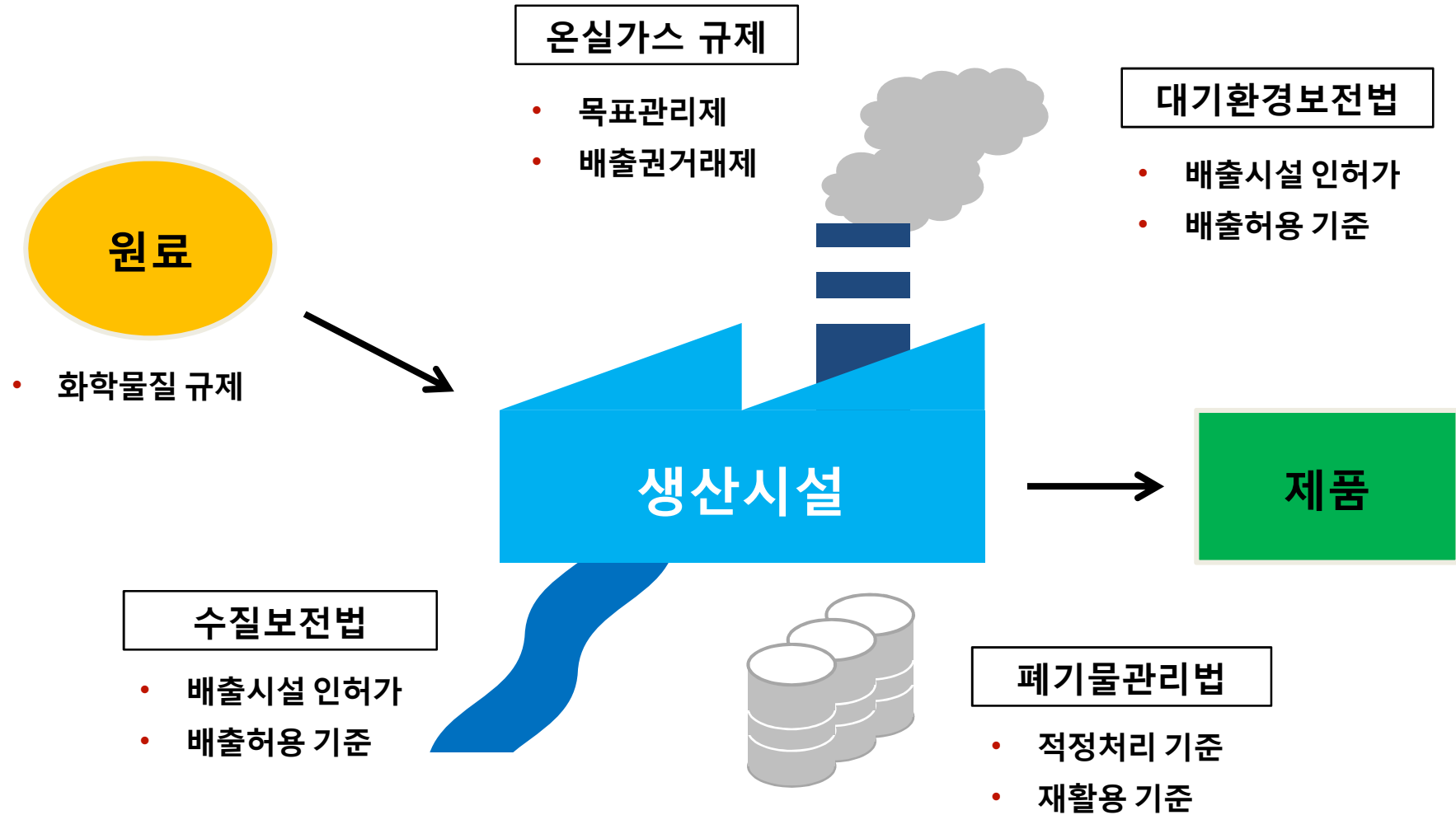
1. 관련 법령의 체계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념
3. 입지규제
4. 최근 입법동향 1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개념 변경
5. 최근 입법동향 2 -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제도 도입

# 1. 관련 법령의 체계



**EHS : Environment, Health, Safety**

# 1. 관련 법령의 체계



# 1. 관련 법령의 체계

## 가. 수질 관련 법령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한강청 고시)
- 한강 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한강청 고시)

### 2) 수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 나. 대기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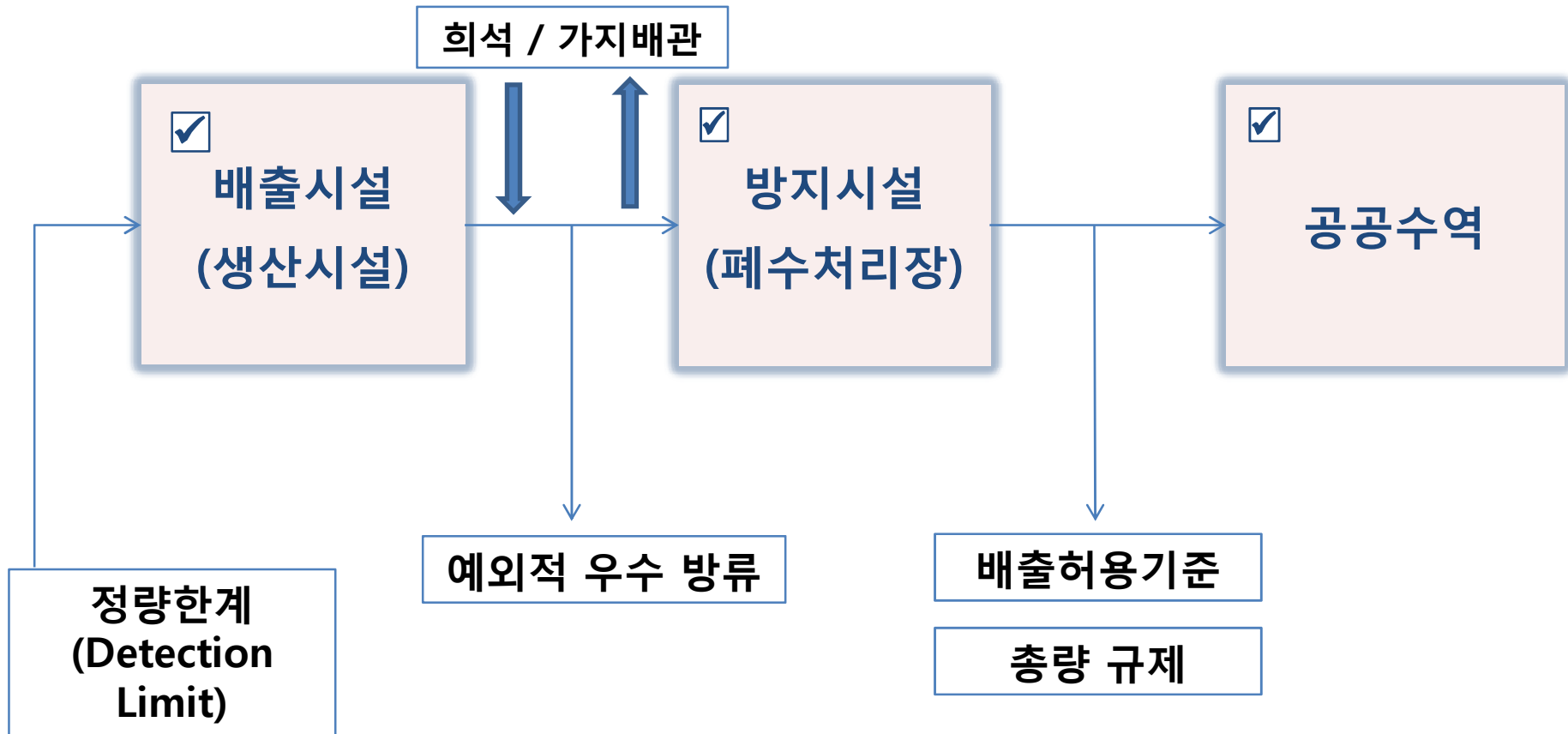
### 1)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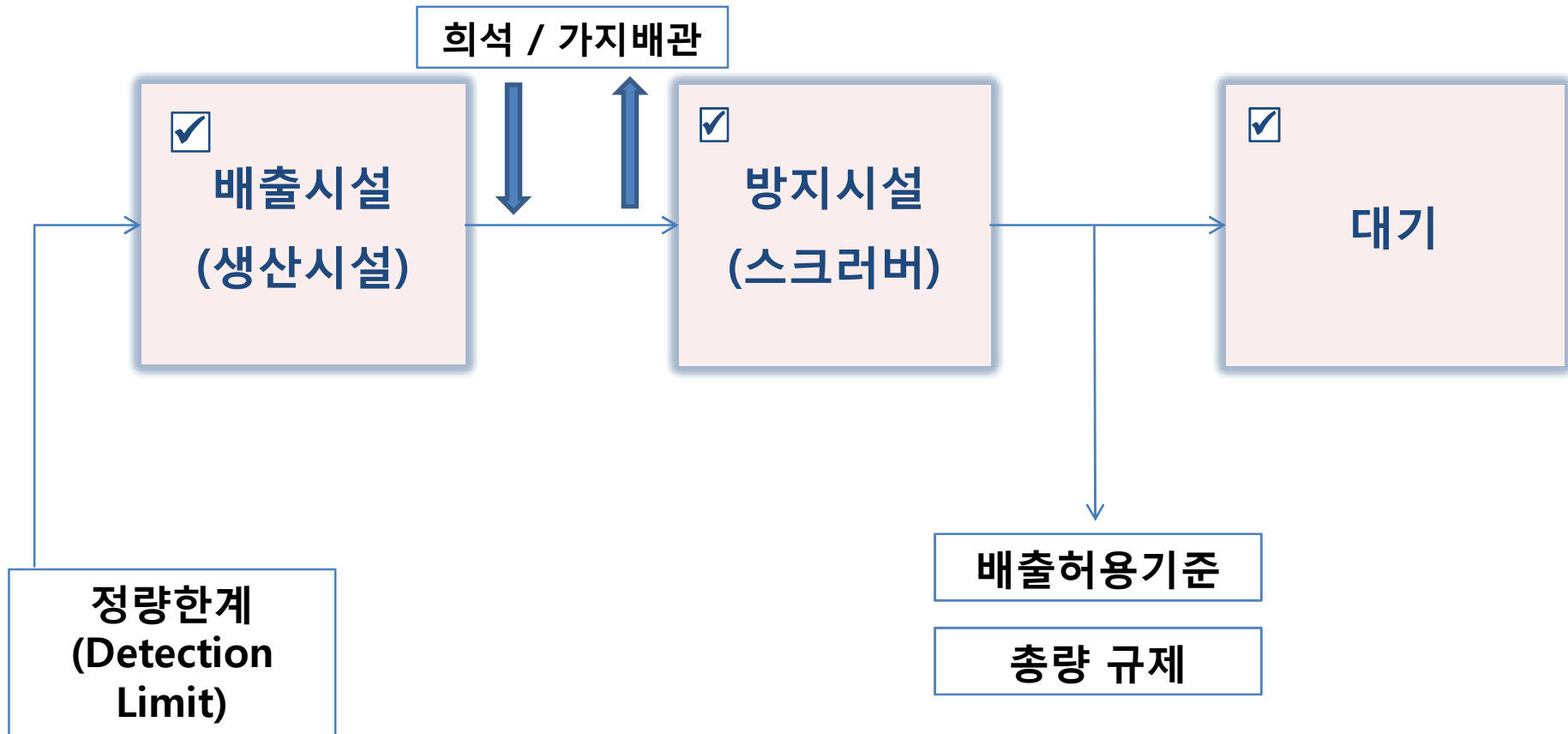
### 3) 기타 : 악취방지법, 온실가스 관련 법령

##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념 (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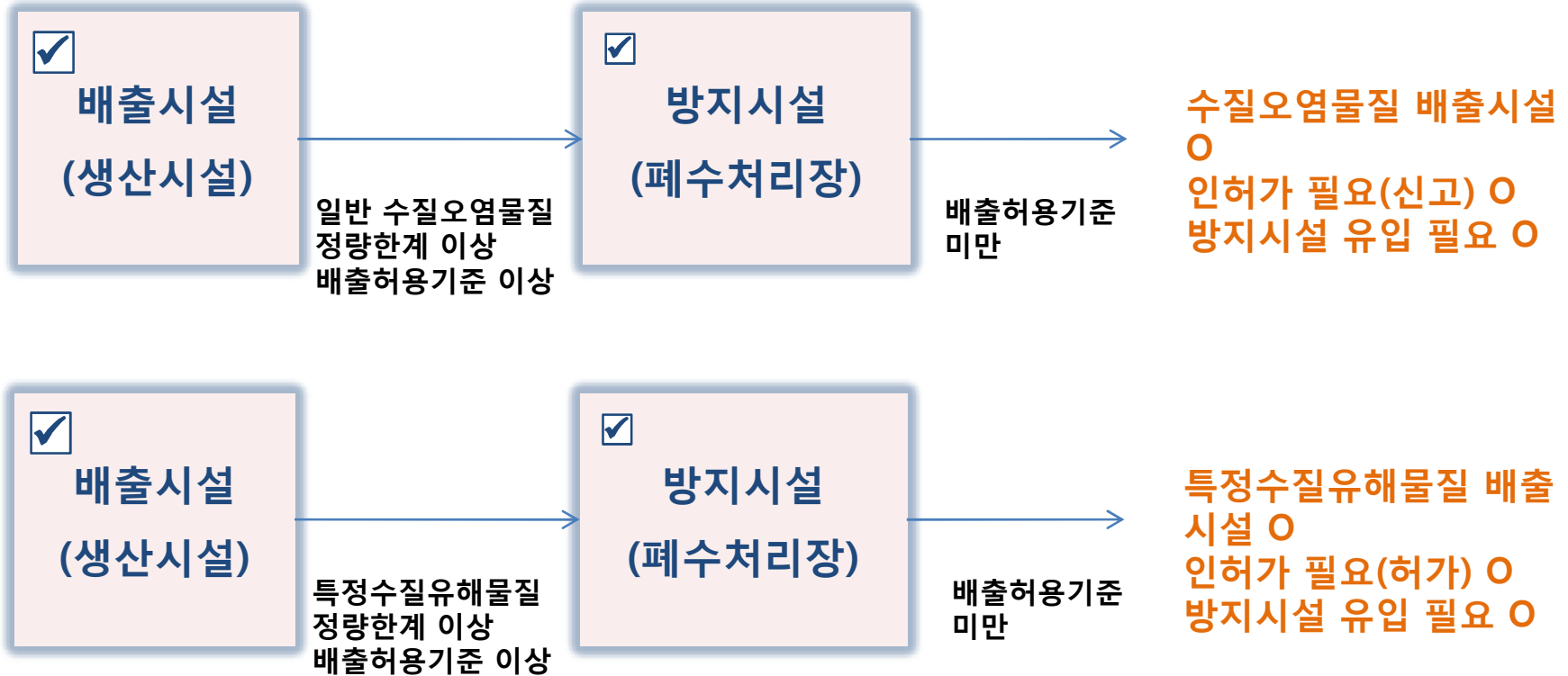
※ 각 물질별 정량한계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확인 가능  
(예: 구리의 정량한계 0.008 ppm - 제1법)  
(예: 페놀의 정량한계 0.05 ppm - 제1법, 직접법)

##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념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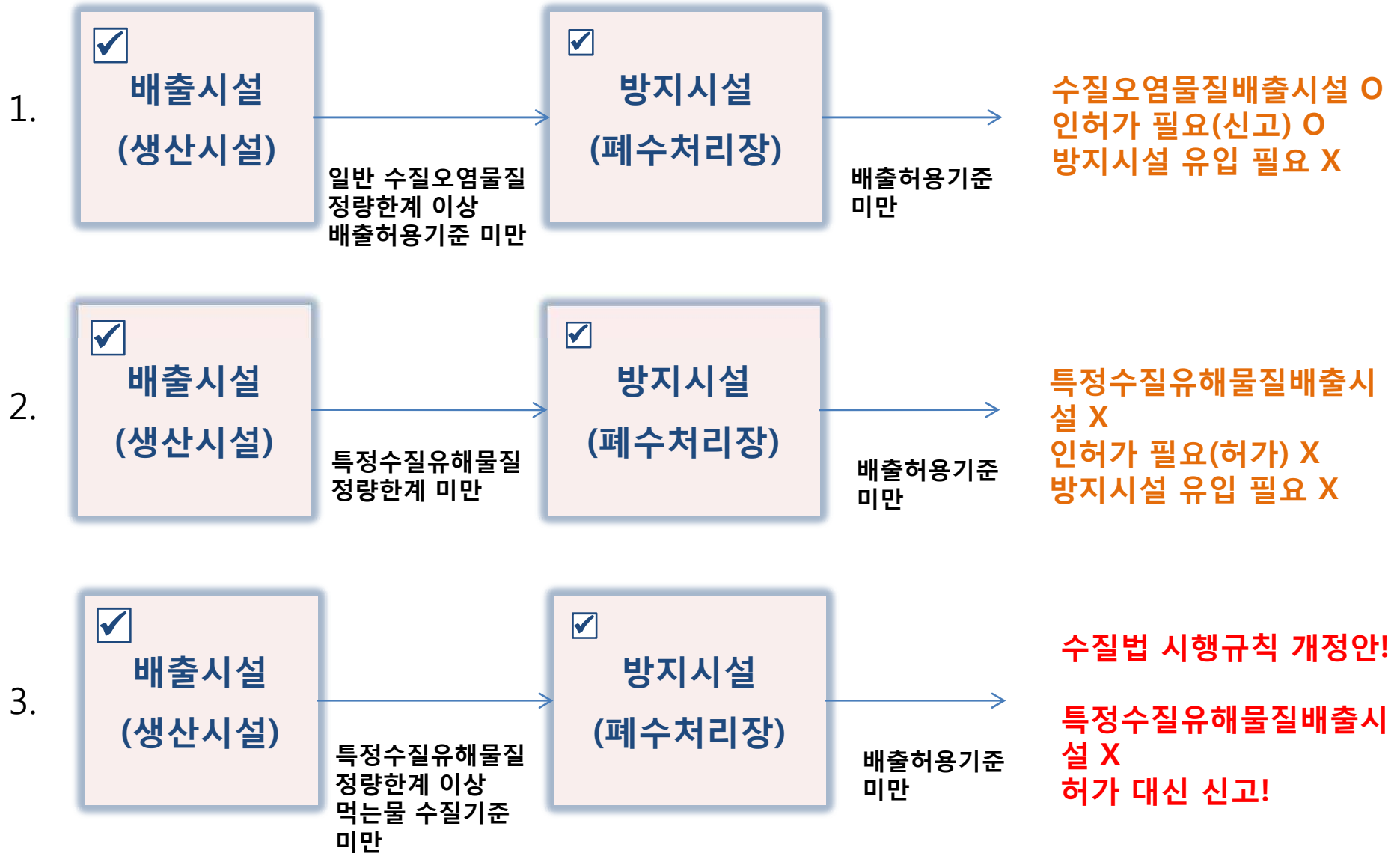
※ 각 물질별 정량한계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확인 가능  
(예: 배출가스 중 카드뮴 - 방법검출한계 0.012ppm - 1법)

##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념





##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념



##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념

단속 보도자료 1

### ☑ 폐수

무허가 배출시설



희석



배출기준 미준수



### 대기

무허가 배출시설



희석



배출기준 미준수



### 3. 입지규제

가.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 (수질 / 대기)

나.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 수변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다. 대기환경규제지역 / 수도권대기관리지역

라. 국토계획법상의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마. 산업단지별 관리기본계획 (예 : 시화/반월)

바. 기타 - 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도시형 공장,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 3. 입지규제

#### 수질법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경기일보 - "유해물질 배출? 저사람들 밥줄 끊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69263>

연합뉴스 - "이천·용인시의회 '기업 몰아내기 단속 그만 하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210368>

### 3. 입지규제

#### 입지규제의 확인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발급
2.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계승관리	범례

### 3. 입지규제

#### 특별대책지역 규제

- 특별대책지역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국토계획법상 규제

-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최근 입법동향 1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개념 변경

수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입법예고 중 (2014. 10. 14.까지)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전	개정 후
<p>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u>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u></p>	<p>가목 1)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u>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별표 4의2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u></p>

## 5. 최근 입법동향 2 –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제도 도입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안

### 1. 매체별 인허가의 통합

- 대기, 소음/진동, 수질, 악취, 토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폐기물

### 2. 원칙적으로 대기 / 폐수 대형 사업장만 해당



**감사합니다.**